

룩셈부르크 가이드라인 한국판 발간 사업

▣ 룩셈부르크 가이드라인 발간 목적

- 모든 형태의 아동 성착취와 성학대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과 기관이 업무를 진행하며 다루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용어와 개념의 사용과 이해를 위한 지침 제공

▣ 룩셈부르크 가이드라인 발간 배경

- 아동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에 대한 다양한 용어의 사용을 둘러싼 혼란이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정책 개발 및 편성, 법제 개발, 데이터 수집 등의 과정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수립되는 대응책에 흥결이 생기고 영향 측정이나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론도 제한적이며 실효성이 떨어지게 됨. 특히 국제/국가간 아동 착취 및 학대의 맥락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룩셈부르크 가이드라인 활용 예

- UN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 10일 발간한 ‘Guidelin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에서 ‘UN 선택의정서가 ICT 기술이 덜 발달되었을 때 작성된 것으로 아동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등의 일부 용어를 교체하겠다’며 룩셈부르크 가이드라인을 주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룩셈부르크 가이드라인 한국판 발간의 의미

- 아동의 성착취와 성학대의 맥락에서 잘못된 용어의 사용은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범죄의 본질을 흐리고 아동에게 낙인을 찍는 등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음. 한국 언론에서 아동 관련 범죄를 보도할 때 선정적 묘사·개인책임 및 처벌강화·고정관념화 프레임을 부여한다는 문제점이 보고됨.
- 한국은 형법, 성폭력특별법, 아동복지법, 성매매특별법 등에 의해 성적인 폭력,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 ICT 기술이 덜 발달한 시기에 제정되었고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법을 개정하여 용어 및 법 적용 등에서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웨컴투비디오 등 내국인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국제적으로 가·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국내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음.
- 이러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리하고 언론, 법과 정책 등에 반영한다면 효과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 룩셈부르크 가이드라인 한국판 발간의 한계 및 예상되는 문제

- ‘본 용어 지침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일련의 방향성을 기술하고 있다. 단, 본 지침에 기술된 견해가 반드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제기구 또는 사무국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서문에 밝히고 있듯이 완벽하게 합의된 개념이 아니라는 한계를 지님.
-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 한국 법률 용어 등의 혼란으로 국내에서도 완전하게 합의된 용어 정리는 어려울 수 있으며 용어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법에 반영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함.

▣ 룩셈부르크 가이드라인 한국판 워킹그룹 역할

- 국제적으로 합의된 용어를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 선정(예 : 근친상간 vs. 친족 성폭력)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상이 정의에 한국 법률이나 문서에서 사용되는 내용 추가(예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용어 추가)
- 용어 사용에 대한 ‘○ ○ ⊗’ 구분
- 필요 시 대안 용어 제시
- 필요 시 가이드라인에 없는 새로운 용어 추가 (예 : 디지털 성폭력)
- 필요 시 가이드라인에 있지만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삭제 혹은 영어 단어 그대로 표기(예 : 섹스팅)
- 필요 시 영어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한국어로 통합(예 : ‘성적으로 만지기’를 ‘성추행’으로 통합)

□ 세부계획(안) -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참 여 분 야		진 행 내 용	기 간
Part 1	정책 · 사회 · 문화 유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INTERPOL) ▪ 국제아동인권센터 ▪ 세이브더칠드런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센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룩셈부르크 가이드라인 A~Q 섹션 용어 논의	9~11월
	법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PAT Korea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국내 법률 관련 회의	11월 말
	탁틴내일 (ECPAT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PAT Korea ▪ 한국젠더법학회(제안 예정) 	한국판 2차 수정 · 집필	12월
Part 2	법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 한국젠더법학회(제안 예정) 	국내 법률 (용어의 법적 기준 등) 관련 집중 논의	1~2월
Part 3	정책 분야 기관 및 자문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INTERPOL)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그 외 기관의 자문그룹 	Part 1~2에 대한 정책적 자문과 기타 유관 기관 소속 자문그룹의 자문 실시	3월
Part 4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INTERPOL) ▪ 국제아동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 세이브더칠드런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센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한국젠더법학회(제안 예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판 전문 검토 : 최종 집필 전 용어 및 본문 등의 내용 검토 (서면으로 진행 예정) 	4월
	탁틴내일 (ECPAT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PAT Korea ▪ 한국젠더법학회(제안 예정) 	한국판 3차 수정 · 집필	4월 말
Part 5	탁틴내일 (ECPAT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PAT Korea ▪ ECPAT International 	ECPAT International 승인 절차	5~6월